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2.20.(화) 조간 2022.12.19.(월) 11:00	배포 일시	2022. 12. 19.(월) 06:00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510)
		담당자	서기관 이정섭 (044-200-607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에 대비, 연근해어업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 대상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기준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나~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영세한 어선소유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선 등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선망 등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 학계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업은 우선 연근해 어선을 조업방법, 어구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업종으로 통합·구분하여, ❶업종별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❷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❸어선소유자가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원의 산업재해율(4.3%)이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응 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선원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22.1.27.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4.1.27 시행)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 대형선망을 제외한 40개 연근해어업 등 어선 4,979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21.12.31 기준)

○ (**사업기간/지원조건**) 2023년(단년도)/민간보조 1,000백만원(국고 100%)

○ (**보조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공모, 보조사업자 지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 추진절차 및 과업내용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수협중앙회에서 **사업 전담부서**(선원지원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세부사업계획* 수립**·추진

*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전문기관·노무사·학계 등)로 구성된 사업수행자 선정(공모)

○ (**과업내용**) ①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업종별 **위험성 평가** 실시 ②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③사업장별 **컨설팅** 실시

* **업종**은 어구, 조업방법 등을 기준으로 **통합·구분**하여 선정하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어선이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표준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은 지자체 또는 각 지역·업종별 수협 등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소외되는 어업인 최소화** 되도록 조치

□ 향후 추진계획

사업수행자 선정 ('23.1월)	→	안전보건 매뉴얼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3.2~9월)	→	사업장별 컨설팅 ('23.10~12월)
중대재해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컨설팅 사업수행자 선정		①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구축 + ② 업종별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조치매뉴얼 마련		시도, 시군 단위 거점별 사업장 안전보건매뉴얼 컨설팅 실시

참고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매뉴얼 체계**

관련 법조문	법령 주요내용	매뉴얼 목록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 및 방침	❶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관리 지침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시행령 제4조제2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필요조치 실시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❷ 위험성 평가 관리지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제4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❸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제5호)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권한, 예산,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❶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관리 지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300인 미만 사업장 외부위탁 가능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 (시행령 제4조제7호)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고 이행 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할 것	❹ 의사소통 지침 ❺ 의사소통 관리 지침
중대산업재해 발생 관련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제8호)	다음 각 목의 메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실시 1.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재해 입은 사람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 조치	❻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지침 ❼ 안전사고처리 지침 ❽ 작업중지권 지침 ⓫ 작업안전조치 지침
도급·용역·위탁시 산재예방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도급·용역·위탁 업무 없음 확인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실시 (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 조치 실시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필요 조치 실시	❾ 안전보건 관계법령 관리지침 ❿ 안전보건교육 지침